

# 부천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. 22) 상정
- 제14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. 22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되고,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19226호, 2005. 12. 30. 공포, 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10조 → 제13조
 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1조 → 제26조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21조제1항 → 제26조제1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  
(안 제2조제1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조례 개정 사유는?	○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맞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함.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○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 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5호
의결 년월일	2008. 1. 23 (제141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. 10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되고,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19226호, 2005. 12. 30. 공포, 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10조 → 제13조
 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1조 → 제26조
- 나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21조제1항 → 제26조제1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2조제1항)

## 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”를 “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원인관계서류”를 “원인 관계 서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조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시장은 제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시에서”를 “시장이”로 하며, “지방의회”를 “부천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뵙아야”를 “이행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지방의회”를 “시의회”로 하고, “채무보증승인통지서(별지 제2호서식)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

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”로 하며, “채권자에”를 “채권자에게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주채무관계”를 “주채무 관계”로 하며, “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에 의하여”를 “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부분 중 “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이 경우 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설정등”을 “설정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부분 중 “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”를 “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”로 하며, “자금에 의하여”를 “자금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상위없는 것을”를 “이상이 없는지를”로 하며, “채무보증서(별지 제4호서식)를 교부한다”를 “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가”를 “시장이”로 하며,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변경코자”를 “변경하고자”로 하고, “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”을 “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연체액등”을 “연체액 등”으로 하고, “보증채무현황표(별지 제5호서식)에 의하여”를 “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”로 하며, “분기경과후 15일이내”를 “분기경과 후 15일 이내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변제기간내”를 “변제기간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

중 “지방의회”를 “시의회”로 하며, “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”를  
“보증채무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을 얻은 경우에는 <u>채무보증승인통지서(별지 제2호서식)</u>를 주채무자와 <u>채권자에</u>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채무보증서의 교부) ①채권자는 <u>제3조의 규정에 의한</u> 통지를 받은 때에는 <u>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에 의하여</u>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대하여 <u>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<u>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</u>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<u>제3조의 규정에 의한</u> 통지내용과 <u>상위없는 것을 확인한 후</u> 채무보증서(별지 제4호서식)를 교부한다.</p>	<p>-----<u>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</u>----- -----<u>채권자에게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채무보증서의 교부) ① --- -----<u>제3조에 따른</u>----- -----<u>주채무 관계</u>----- -----<u>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<u>이 경우 제2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설정 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</u>----- -----<u>자금에 따라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u>제3조에 따른</u>----- -----<u>이상이 없는지를</u>-----<u>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.</p> <p>제5조(보증채무의 변경)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6조(보고) 채권자는 채무액, 이자,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(별지 제5호서식)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보증채무의 이행)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④ 시장이----- -----제3항에 따른----- -----.</p> <p>제5조(보증채무의 변경) ----- ----- -----변경하고자-----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-----.</p> <p>제6조(보고) ----- ---연체액 등-----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-----분기경과 후 15일 이내----- -----.</p> <p>제7조(보증채무의 이행) ① ----- ---변제기간 내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시의회----- -----보증채무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 필요한----- -----.</p>